

2026학년도

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

이주배경구직자 직업교육과정 모집요강



한국폴리텍대학
성남캠퍼스

2026학년도 이주배경구직자 직업교육과정

다문화가정, 북한이주주민, 난민, 외국인 등 - 상세 지원자격 4page 참고

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

1. 대학소개

▶ 대학 특색

국가가 운영하는 국책 기술대학

-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
- 판교 테크노벨리를 품은 4차산업 선도 대학



산업현장에 강한 실무 중심 대학

- 현장성 높은 시설과 장비,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진, 체계적인 교육과정
- 끊임없는 교육혁신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원하는 기술 인재양성 대학



이론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

- NCS(국가직무능력표준)를 기반으로 실습, 이론 8:2 비율의 학사운영으로 학생 수요에 맞춘 자격취득 및 실무중심의 교육 제공



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

-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AI+X 교육



실무중심의 커리큘럼

30%

이론

70%

실습

+α

자격증취득, 인성교육

▶ 입학 특전

- 국비 지원 교육으로 매월 **훈련장려금(교통비+훈련수당) 지원**(월 최대 116,000원)
(* 단위기간의 80% 이상 출석 시 일할 지급)
- 수료 후 지속적인 사후지도
- 수료완료 시 교육수료증 발급 및 전기자격증 취득 지원
- 기숙사 제공

2. 과정소개

▶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교육과정(4개월, 600시간) **교육내용** 교양 : 184시간 / 전공 : 416시간

-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직무수행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
- 만 15세 이상
- 강사 : 전기과 교수외 전기분야 현장 전문가

3. 모집인원

과정	학과	직종	모집 정원	모집 인원	선발인원	
					일반	기회균형
이주배경 구직자 직업교육과정	전기	전기 3D-Modeling	20	20	14	6

※ 기회균형선발 인원은 모집 정원의 30%에서 선발(단, 미달 시 일반선발 인원으로 모집)

4. 모집일정

모집차수	원서접수	면접	합격자발표	등록기간
모집1차	2026. 4. 27.(월)~ 2026. 6. 5.(금)	2026. 6. 9.(화)	2026. 6. 10.(수)	2026. 6. 10.(수)~ 2026. 6. 12.(금)
자율모집	결원 발생 시 캠퍼스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예정 / 홈페이지 공지			
교육기간	2026. 6. 22.(월) ~ 2026. 10. 30.(금) * 입학일(교육개시일): 2026. 6. 22.(월)		교육시간	09:00~18:00 (주 5일)

● 원서비 및 전형료 무료(중식제공)

● 원서접수(접수된 원서는 수정·취소 불가)

- 접수 방법: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홈페이지 접속 → 입학안내 → 원서접수 및 등록(원서접수) → 과정선택(이주배경 구직자 직업교육과정) → 입학원서 작성
- 홈페이지: <https://www.kopo.ac.kr/seongnam>

● 서류제출

- 지원자격 증빙 서류는 면접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
- 서류 미비 시 해당 항목 미반영
- 주소: [13122]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교학처
- 이메일: poly103@kopo.ac.kr
- * 서류 제출 후 도착 여부 확인을 위한 연락 필수

● 면접 안내

- 면접 시간 및 장소는 면접일 전일까지 캠퍼스별 홈페이지에 공지되며, 개별 공지하지 않음
-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됨

● 모집요강 기재 내용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● 대학 사정에 의해 입학인원 일정비율 미달시 개설이 안될수도 있습니다.

5. 지원자격

▶ 기본 입학 자격 ※ 자격1~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구분	내용
자격1	·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①. 결혼이민자 ②. ①의 국내출생 자녀 ③. ①의 중도입국 자녀 나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. 「난민법」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라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(F-4) 마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(F-5) 자격 소지자 바.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 가족 중 ‘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’ 대상자
자격2	·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(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3조, 같은법 시행령 제4조, 제6조, 제6조의2) *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가. 미취업자(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) 나. 비정규형태 근로자(5p 상세 자격 기준 확인) - 일용직, 단시간 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,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다. 개인사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(5p 상세 자격 기준 확인) 라. 노무제공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(5p 상세 자격 기준 확인) 마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(야간,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) 바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(6p 상세 자격 기준 확인) 사.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국세기본법」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(6p 상세 자격 기준 확인) 아.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
자격3	만 15세 이상인 자

▶ 상세 입학 자격

● 비정규형태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

- **(일용직)**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- **(단시간근로자)**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
- **(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 근로자)** 일시적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
● 개인사업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

- **(공통)**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(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)인 사람
 ※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“종합소득세” 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 (소득금액증명 확인)
- **(부동산임대사업자)** 최근 1년간 「부가가치세법」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
 ※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
- **(부동산임대업 이외)**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(수입금액)이 4억 미만인 사람
 ※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
 ※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4억 미만인 사람

● 노무제공자¹⁾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

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사람

● 법인의 대표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

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 (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)이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

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

-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

1)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종사자, 프리랜서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

▶ 선발 제외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시행령 제6조

-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
-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제외 대상 아님
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을 적용받는 사람
 -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
-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·용자·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
- 「고용보험법」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
-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
- 입학전형관리(소)위원회에서 교육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

▶ 기회균형선발 대상자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 시행령 제10조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



Autodesk사 BIM(Revit) 소프트웨어 활용



Autodesk사 BIM 소프트웨어 활용 수료생 건축전기설계 결과물

6. 제출 서류

▶ 유의사항

- 제출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(예외 별도 표기)
-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
- 방문, 등기, 팩스, 캠퍼스 대표 이메일 발송본 인정
- 재지원 수험자 중복 서류 면제 가능
-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▶ 공통 서류

자격 구분	제출 서류	비고 (발급기관)
모든 지원자	① 입학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[서식1,2]

▶ 자격1에 관한 서류

자격 구분	제출 서류	비고 (발급기관)
결혼이민자	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② 귀화자인 경우 기본증명서(상세)	
국내출생자녀	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(또는 모)가 귀화자인 경우 부(또는 모)의 기본증명서(상세)	
중도입국자녀	※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전 ① 부(또는 모)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② 자녀와 부(또는 모)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출생증명서, 유전자검사 확인서류, 신원보증서 등) ※가족관계등록부 등재 후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(또는 모)가 귀화자인 경우 부(또는 모)의 기본증명서(상세)	▶시/군/구청, 행정복지센터 및 서류발급기관
북한이탈주민	▪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	
난민	▪ 법무부장관 명의의 직업훈련 추천서	[서식3]
외국국적동포 (F-4)	▪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	▶출입국 ·외국인청(사무소)
영주자(F-5)	▪ 영주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	▶출입국 ·외국인청(사무소)
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	①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 ② 아래 국적판정 구분에 따른 서류 중 택1 - (국적판정 전) 국내거소신고증 사본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, 외국인등록증 사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- (국적판정 후) 국적보유판정 통지서, 기본증명서(상세)	▶대한적십자사 ·출입국 ·외국인청(사무소) 및 시/군/구청, 행정복지센터

▶ 자격2에 관한 서류

자격 구분	제출 서류	비고 (발급기관)
미취업자 (고용보험 미가입자)	▪ 제출서류 없음	▶ 담당자가 시스템 조회
비정규형태 근로자	▪ 비정규 형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	[서식4]
개인사업자 (부동산 임대업 외)	일반과세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	
	간이과세자 ▪ 사업자등록증명원	
	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	
	휴업자 ▪ 휴업사실증명원	
사업자	휴업자 ▪ 휴업사실증명원	▶ 세무서 및 홈택스
부동산 임대사업자	일반과세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	
	간이과세자 ▪ 사업자등록증명원	
	면세사업자 ▪ 사업자등록증명원	
	휴업자 ▪ 휴업사실증명원	
노무제공자	▪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또는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	▶ 산업체, [서식5]
법인 대표자	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	▶ 세무서 및 홈택스
고유번호 단체 대표	① 고유번호증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	▶ 세무서 및 홈택스
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	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승인 통지서	▶ 근로복지공단
졸업까지 남은 연한 2년 이내인 자	① (전문대학) 재적증명서 ② (3년제대학이상)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재적과 학년을 증빙하는 모든 종류의 증명서 인정	▶ 해당 대학

▶ 기회균형선발 서류

• 다음 중 각 구분에 해당하는 자 필요서류 제출

자격 구분	제출 서류	비고(발급기관)
수급권자	▪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(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)	▶ 시/군/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(원서접수일 이후 발급)
장애인	▪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(수첩, 복지카드) 사본	▶ 행정복지센터
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	① 한부모가족 증명서(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) ② 가족관계증명서(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)	▶ 시/군/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(원서접수일 이후 발급)
준고령자 또는 고령자	▪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주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온라인 접수자는 제출 불필요)	▶ 시/군/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

7. 제출 서류

▶ 성적반영 요소 및 배점

성적적용비율	계	성적반영 요소
		면접 점수
면접 100%	100	100

▶ 면접안내

- 면접 시간 및 장소는 캠퍼스 홈페이지 통해 공지
- 면접 당일 신분증 및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하며, 면접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

▶ 선발방법 및 동점자 처리

구분	내용
선발방법	▪ 합격자 선발은 학과(직종)별 지원자 중에서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▪ 최초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 합격 후보자 중에서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합격자 선발 ▪ 합격자 선발 시 합격권 안에 포함된 2명 이상의 총점이 동점인 경우,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함 ▪ 선발 이후 수험자의 입학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, 입학자격 재심의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▪ 각 전형 미달 발생 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교차 선발됨 ▪ 입학전형 개별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, 사정 방법 등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(소)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▪ 제출서류가 위·변조되거나 불법한 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판명되면 입학을 취소 ▪ 접수된 서류는 일·체 반환되지 않으며, 접수 후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
동점자 처리기준	▪ NCS 영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동점자 처리 1. 의사소통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2. 자기개발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3. 대인관계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4. 직업윤리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

8. 합격자발표·충원 및 등록 안내

구분	유의사항
합격자발표 및 충원	- 합격자 발표는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, 반드시 합격 여부를 스스로 조회 및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- 충원합격자 발표는 지원자 연락처(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본인 전화번호)로 개별 통보함 - 전화 충원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람 - 전화 이외의 연락수단(이메일 등)을 통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음 -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고지된 등록 기간 내 등록 또는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 - 충원 합격자 개별 통보 시 대학의 2회(전화 또는 문자) 이상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불가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 - 전화통화 불가 및 연락처 변경으로 발생 된 수험생의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
등록 방법	- 등록방법: 온라인 등록(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통한 등록) - 합격자는 캠퍼스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와 등록 유의사항을 직접 확인 후 등록 -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시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추가 연락없이 입학을 취소함 2개 이상의 폴리텍대학 내 캠퍼스에 이중으로 등록 시에는 불합격 처리

9. 등록포기 안내

구분	내용
합격자 등록포기 신청방법	-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포기 신청 - 등록포기 신청이 승인 처리되면 취소할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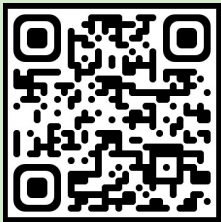
10. 지원자 필독 유의사항

유의사항	내용
접수취소 (변경) 불가	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폴리텍 대학 간 복수지원 가능	- 폴리텍 대학 간 복수지원 제한 없음 - 등록 및 등록포기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. 단, 이중등록 금지 - 동일한 캠퍼스·모집과정·모집(과정)차수에서 한 개 학과만 지원가능
면접 불참자	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, 지원 시 캠퍼스의 면접 일정을 미리 확인 바람
전화번호 정확히 입력	충원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(추가연락처 포함)를 원서접수 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충원합격자 개별통보를 위한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된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
필수(추가) 서류제출	- 원서접수 완료 후 자격별 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원자는 면접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, 이메일 발송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서류미제출자 및 서류미비자는 불합격 처리함 - 제출서류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며,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함 -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-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
우선선발 지원자	우선선발자로 지원한 경우, 해당자격의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합격 처리를 원칙으로 함
합격/입학 무효처리	-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함 - 제출서류를 위·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자 - 합격 또는 입학한 후라도 사실조회 결과 지원자격 미달인 자 -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-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고용보험 상설 처리가 되지 않은 자 - 폴리텍대학 내 과정구분 없이 이중등록이 된 자 -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
기 타	-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입학전형관리(소)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-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- 모집요강 기재 내용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- 대학 사정에 의해 학과 통폐합 및 모집 중단, 폐강될 수 있음
문의사항	- 입시: 031-739-4012 - 전기과: 031-739-4074

대학 안내도



- 지하철 8호선 산성역(1번출구) 남한산성 방향 250m
- 성남 시내버스 : 2. 2-1, 200, 300(산성동 종점 하차), 88, 88-1, 33-1, 4419(대학 정문 하차)
시외버스 : 성남 야탑 종합터미널 하차, 분당선 북정역 환승, 8호선 산성역 하차
- 기차 : SRT 수서역 하차, 분당선 북정역 환승, 8호선 산성역 하차(약 20분 소요)



1기 수료자 생생 인터뷰
(중앙일보/'26.04.01)



25년도 1기 수료식
(YouTube)



25년도 1기 수료식
(성남데일리/'25.12.02)



What BIM?


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
 대표번호 : 031-739-4000 입시문의 : 031-739-4012
<http://www.kopo.ac.kr/seongnam>